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0764 과태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하○○, 김○○
피 고	1. ○○○○○○공단
	2. ○○시 ○○구청장
	3. ○○시 ○○구청장
	4. ○○시장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세 678,550원, 2014. 9. 11.경에 한 취득세 1,255,420원[1]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환경개선부담금 1,587,4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가.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세 772,480원[2]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환경개선부담금 1,863,3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시장이 원고에게 2015. 4. 6.경 한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1,593,000원 및 자동차정기검사미필 과태료 531,000원(각 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결손처분 등의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4.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2015. 3.경 한 건강보험료 2,056,590원(2012. 1. - 2015. 2. 부과분)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255,48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는 772,45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23.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첨부자료 '별지3' 기재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

1) B은 2012. 1.경 원고 명의로 C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위탁관리(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 사건 차량이 위 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되면서 차량번호는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다), 2013. 9. 8.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2) C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4. 5. 15.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가단3411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차량은 2014. 6. 26. 원고 앞으로 촉탁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되었으며, 자동차번호는 '(차량번호 3 생략)'로 변경되었다가, 2022. 11. 15. 연령초과로 멸실인정되어 직권 등록말소예고 되었다.

4) B은 2014. 8. 28. 위 1. 가. 1)항과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단708, 2014고단1419(병합), 2014고단2381(병합) 판결].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1) 피고 ○○○○공단은, 원고가 2011. 12. 1.자로 ○○○○공단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4. 6. 26.부터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였으며 2015. 2.까지 위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고 보아, 2015. 3.경 체납 보험료 및 2014. 7.부터의 자동차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과점수가 포함된 보험료(2012. 1.분 - 2015. 2.분) 2,056,5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별지 1 '○○○○공단 보험료 부과처분' 부분 참조).

2) 피고 ○○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736,630원을 직권고지하였고, 2019. 10.경까지의 위 취득세 체납액 합계는 1,255,420원이다. 위 피고는 2014. 수시분 및 2014년 2기분부터 2017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각 부과하였고, 위 각 자동차세 체납액 합계는 가산금 포함 678,550원이다(별지 1 '○○구청장 자동차세 부과처분' 부분 참조). 한편 위 피고는 2014년 2기분부터 2018년 2기분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부과하였고, 그 부과금 합계는 가산금 포함 1,587,490원이다(별지 1 '○○구청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부분 참조)

3) 원고가 2018. 11. 21. ○○구로 주소이전을 하여, 피고 ○○구청장은 2018년 2기분부터 2022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각 부과하였고, 위 각 자동차세 체납액 합계는 가산금 포함 772,480원이다(별지 1 '○○구청장 자동차세 부과처분' 부분 참조). 한편 위 피고는 2019년 1기분부터 2022년 2기분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부과하였고, 그 부과금 합계는 가산금 포함 1,863,380원이다(별지 1 '○○구청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부분 참조).

4) 피고 ○○시장은 2015. 2. 4.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900,000원을 부과하고, 2015. 4. 7.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현재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산금 포함 1,593,000원,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가산금 포함 531,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차량은 2013. 10. 7.경 위 1. 가. 4)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해외로 밀수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411판결에 의해 2014. 6. 26. 원고에게 그 명의가 촉탁될 당시 이미 국내에 이 사건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 강제 이전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1. 나.항 기재 각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피고 ○○시장의 각 과태료부과처분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따르면 행정청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음에도, 위 각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4.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시장의 각 과태료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본안전항변

1) 피고 ○○시장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미필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에 따라 적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과태료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위 법은 이러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과태료 처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3)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정기검사미필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15의4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과태료 처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28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며,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각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등록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 ◯◯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시장의 결손처분 등 부작위위법 확인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

1) 피고 ◯◯시장은, 과태료 결손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 ◯◯시장에게 결손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시장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행정청은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 제1항 제2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시장에게 결손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행정소송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 ○○구청장, ○○구청장의 각 본안전항변[3)]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각 자동차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본문).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은 취소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본문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의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 ○○구청장, ○○구청장의 각 본안전항

3) 피고경정(○○시에서 ○○시, ○○구청장, ○○구청장으로 경정) 이후 피고 ○○구청장은 2023. 11. 10. 준비서면에서 본안전항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 ○○구청장은 본안전항변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2023. 10. 19. 변론기일 위 피고들은 이전의 서면을 모두 원용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 이전 피고 ○○시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하여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며, 위 피고들이 위 본안전항변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고 ○○구청장, ○○구청장의 본안전항변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 ○○○○공단의 본안전항변

1) 피고 ○○○○공단은 원고가 그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 ○○○○공단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대한 판단(자동차세,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4]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가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을 말한다"[5]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가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4) 현행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과 그 규정 취지가 같다.

5) 현행 지방세법 제124조와 그 규정 취지가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부과한 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은 적법하고, 위 각 세금 및 과태료, 부담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2013. 10. 7.경 해외로 밀수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10. 23. 'D(주)'에서 종합검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등 자동차 등록원부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이 사건 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어 국내에 부존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1514 판결 등 참조). 지방세 관계법령상 이 사건과 같은 소유권 강제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확정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이상 재화의 이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명의는 공부상 명의에 따라야 하며, 이 사건 차량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 해외로 밀수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구청장, ○○구청장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각 부과처분에 관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여 본다.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시·도지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이 사건 차량이 각 취득세, 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 발생시점에 원고가 B의 횡령 범죄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던 상태라고 하여도,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를 전제로 한 세금, 과태료, 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그 재산에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가 포함된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항 제3호).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명의자인 원고가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보험료 부과처분 중 일부(2014. 7. - 2015. 2.분)만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로 인한 자동차 부과점수가 포함된 것이므로, 2012. 1.부터 2015. 2. 전체의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장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정기검사미필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

판사 김◯◯

판사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별지 1

○○○○공단 보험료 부과 처분

(단위:원)

순번	부과년월	보험구분	부과내역			자동차 부과 내역		
			계	보험료	연체금	자동차 부과점수 (A)	부과점수당 보험료 (B)	자동차 점수 산정 보험료 (C)
1	2012.01	건강	120,150	103,530	9,280	-	-	-
		요양		6,780	560			
2	2012.02	건강	120,150	103,530	9,280	-	-	-
		요양		6,780	560			
3	2012.03	건강	120,150	103,530	9,280	-	-	-
		요양		6,780	560			
4	2012.04	건강	120,150	103,530	9,280	-	-	-
		요양		6,780	560			
5	2012.05	건강	120,150	103,530	9,280	-	-	-
		요양		6,780	560			
6	2012.06	건강	120,150	103,530	9,280	-	-	-
		요양		6,780	560			
7	2013.04	건강	76,130	65,620	5,860	-	-	-
		요양		4,290	360			
8	2013.05	건강	76,130	65,620	5,860	-	-	-
		요양		4,290	360			
9	2013.06	건강	76,130	65,620	5,860	-	-	-
		요양		4,290	360			
10	2013.07	건강	76,130	65,620	5,860	-	-	-
		요양		4,290	360			
11	2013.08	건강	76,130	65,620	5,860	-	-	-
		요양		4,290	360			
12	2013.09	건강	76,130	65,620	5,860	-	-	-
		요양		4,290	360			
13	2013.10	건강	76,130	65,620	5,860	-	-	-
		요양		4,290	360			
14	2013.11	건강	87,540	75,460	6,760	-	-	-
		요양		4,940	380			
15	2013.12	건강	87,540	75,460	6,760	-	-	-
		요양		4,940	380			
16	2014.01	건강	89,060	76,730	6,860	-	-	-
		요양		5,020	450			
17	2014.02	건강	89,060	76,730	6,860	-	-	-
		요양		5,020	450			
18	2014.03	건강	89,060	76,730	6,860	-	-	-
		요양		5,020	450			
19	2014.04	건강	13,750	11,940	1,010	-	-	-
		요양		780	20			
20	2014.05	건강	13,750	11,940	1,010	-	-	-
		요양		780	20			
21	2014.06	건강	13,750	11,940	1,010	-	-	-
		요양		780	20			
22	2014.07	건강	40,750	35,120	3,150	35	175.6	6,548
		요양		2,300	180			
23	2014.08	건강	40,750	35,120	3,150	35	175.6	6,54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요양		2,300	180			
24	2014.09	건강	40,380	35,120	2,800	35	175.6	6,548
		요양		2,300	160			
25	2014.10	건강	40,010	35,120	2,450	35	175.6	6,548
		요양		2,300	140			
26	2014.11	건강	39,640	35,120	2,100	35	175.6	6,548
		요양		2,300	120			
27	2014.12	건강	39,270	35,120	1,750	35	175.6	6,548
		요양		2,300	100			
28	2015.01	건강	39,420	35,600	1,410	35	178	6,638
		요양		2,330	80			
29	2015.02	건강	39,050	35,600	1,060	35	178	6,638
		요양		2,330	60			
보험료합계			2,056,590	1,779,370	151,700	-	-	-
				116,450	9,070			
자동차 점수 산정 보험료 합계			-	-	-			52,564
				-	-			
자동차 점수 산정 보험료 (C) = 부과점수(A) x 부과점수당 보험료(B) + 부과점수(A) x 부과점수당 보험료(B)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구청장 자동차세 부과처분

세목	과세대상	세액(원)	부과일자
자동차세	2014.6.양도분	2,630	2014.7.7.
자동차세	2014.7.1.~12.31.	96,560	2014.12.8.
자동차세	2015.1.1.~6.30.	96,560	2015.6.5.
자동차세	2015.7.1.~12.31.	96,560	2015.12.5.
자동차세	2016.1.1.~6.30.	96,560	2016.6.8.
자동차세	2016.7.1.~12.31.	96,560	2016.12.6.
자동차세	2017.1.1~6.30	96,560	2017.6.7.
자동차세	2017.7.1.~12.31.	96,560	2017.12.6.
합계		678,55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구청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과목	부과대상	부담금(원)	부과일자
환경개선부담금	2014.6.~6.30.	6,180	2014.8.28.
환경개선부담금	2014.7.1.~12.31.	223,780	2015.3.7.
환경개선부담금	2015.1.1.~6.30.	224,800	2015.8.29.
환경개선부담금	2015.7.1.~12.31.	224,800	2016.3.6.
환경개선부담금	2016.1.1.~6.30.	222,550	2016.8.31.
환경개선부담금	2016.7.1.~12.31.	229,860	2017.3.6.
환경개선부담금	2017.1.1~6.30	227,760	2017.9.5.
환경개선부담금	2017.7.1.~12.31.	227,760	2018.3.6.
합계		1,587,490	

◯◯구청장 자동차세 부과처분

세목	과세대상	세액(원)	부과일자
자동차세	2018.7.1.~12.31.	96,560	2018.12.6.
자동차세	2019.1.1.~6.30.	96,560	2019.6.6.
자동차세	2019.7.1.~12.31.	96,560	2019.12.5.
자동차세	2020.1.1.~6.30.	96,560	2020.6.5.
자동차세	2020.7.1.~12.31.	96,560	2020.12.7.
자동차세	2021.1.1.~6.30.	96,560	2021.6.6.
자동차세	2021.7.1.~12.31.	96,560	2021.12.6.
자동차세	2022.1.1~6.30.	96,560	2022.6.7.
합계		772,48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구청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과목	부과대상	부담금(원)	부과일자
환경개선부담금	2018.7.1.~12.31.	129,170	2019.3.6.
환경개선부담금	2019.1.1.~6.30.	246,410	2019.9.3.
환경개선부담금	2019.7.1.~12.31.	246,410	2020.4.24.
환경개선부담금	2020.1.1.~6.30.	247,380	2020.11.4.
환경개선부담금	2020.7.1.~12.31.	247,380	2021.5.6.
환경개선부담금	2021.1.1.~6.30.	246,180	2021.11.3.
환경개선부담금	2021.7.1.~12.31.	246,180	2022.5.4.
환경개선부담금	2022.1.1~6.30.	254,270	2022.11.8.
합계		1,863,380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별지 2

관계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하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소득 2.재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5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